(월)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서

이름				주민번.	호				
휴대폰				최종학	력			대) □ 전문대졸 학교졸 □ 석 <i> </i>	
이메일				주소					
자격해당	□ 대기업 최근 3년 훈련 미참가자, 45세 이상인자, 육아휴직자, 이직 예정자(80%지원) □ 우선지원대상,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(100%지원) □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(100%지원)								
수강료						결제금액			
직장명						재직(겨부	□ 재직	□ 퇴사
교육과정						주중 / 주말		훈련기간	
而 去 和9						시간 :			
	보(주민등록(○ 개인정보 ○ 수집하는 ○ 개인정보	번호 등)를 포함한의 수집·이용 목 개인정보 항목: 의 보유 및 이용2	한 개인정 목적: 훈련 업병 성명, 목 기간: 직	!보를 다음 련비용 지원 등력개발훈 주민등록번 업능력개발	과 길 원, ^조 현제 호(필 발정도	날이 직업능력개 탄업능력개발훈련도 실적·성과 보수)/지문(선택 보망(HRD-Net)에	발정보망(HRL 현 카드 발급 평가, 모니E)/(휴대)전호 서 수집. 계:)-Net)에 수집 · (개인별 훈련이력 서링, 취업지원 등 I-번호 속 관리	
개인정보의 수집	호 등)를 포함 정보를 보호	함한 개인정보가 하여야 합니다.	필요하며	ᅧ, 고용노	동부는	= 「개인정보 .	보호법」에 [다라 훈련생으로부	별정보(주민등록번 부터 제공받는 개인
□ 동의함	개인정보를 기 4. 고용노동부는	데공한 훈련생은	언제나 :	자신이 입력	력한	개인정보의 열	람・수정을 선	신청할 수 있습니	을 사용하지 않으며 다. 아래와 같이 제공
	○ 제공목적 ○ 제공된 <i>기</i> 5. 본인은 위 1	: 제휴금융기관 : 근로자 직업능 배인정보의 보유 및 ~ 4의 내용에 때 !을 동의합니다.	및 이용기	기간 : 정도	보제공	일로부터 제공	목적 달성시 도 운영을 위	까지 해 개인식별정보	(주민등록번호 등)
지문인식, 카드 인식기에 의한 출결관리	보다 공정하 2. 출결관리시스 보호 등에 관 3. 고용노동부는	고 투명하게 운영 :템 운영을 위해서 한 법률」등 관계 : 훈련생의 동의	명하기 유 서는 훈련 예법령에 없이 개1	위하여 출결 1생 개인식 따라 훈련 인정보를 기	불관리 별정 생으 제3자	시스템을 운영 보가 필요하며 로부터 제공받 에게 제공하거	하고 있습니[, 고용노동부 는 개인정보를 나 동 출결관	다. 는 「정보통신망 를 보호하여야 합 리시스템 운영 S	훈련의 출결관리를 이용촉진 및 정보 니다. 비의 목적으로 사용 비공에 대한 철회를
□ 동의함	할 수 있습니	다. ~3의 내용에 따른							- E번호,유효기간)를
사항 및 출결치	그린컴퓨터아카데미 헤크를 하는데 엄격 배상자격에 해당하지	히 지킬 것이며, 톤	본인의 능	력개발에 년	노력함	: 것을 서약합니	i다.		
담당자 :			201	년	월	일			
						₹ (결지원자 :		(이름)
		전 화			()2-715-2111			
FAX)2-717-7611				
그린컴퓨터아카데미신혼 GREEN COMPUTER ACADEMY									

국비지원과정(근로자카드) 유의사항

★ 본 과정은 NCS편성과정으로 훈련과정의 성취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능력단위 종료 후 평가를 진행합니다 결석 시 출석일에 별도로 평가를 진행하오니, 결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● 표1) 수료기준

수 료 기 준						
	10일 미만 또는 40시간미만	10일 이상이면서 40시간이상				
총 훈련시간(분)의 80% 이상 출석		총 훈련일수의 80% 이상 출석				
ex) 36시간(2,160분)중 1,728분 이상 참여시 수료		ex) 20일 중 16일 이상 출석시 수료				
입실 및 퇴실 자료가 없는 경우이거나 수업 참여시간이 총 수업시간의 50%미만일 경우						
	1. 출결 미체크(입/퇴실)					
결석	석 2. 지각·조퇴·외출 누적 3회시					
	3. 지각, 조퇴 또는 외출로 실제훈련시간이 1일 목표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결석한 것으로					
	본다. (훈련일수가 10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과정에 한정한다)					

◉ 표2) 미수료 및 수강포기 등 중도탈락에 따른 지원제한 기준

구분	제한 처분							
	19년 1월 15일 이전 카드 발급자	19년 1월 15일 이후 카드 발급자	부정출결					
1회	·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차감 · 60일간 계좌 사용 중지	·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차감	·수업 참여하지 않고 부정출결 , 대리출석 또는 수업 중 무단외출					
2회	· 지원한도액에서 30만원 차감 ·60일간 계좌 사용 중지 ·훈련비 자부담 20% 부과	 지원한도액에서 50만원 차감 60일간 계좌 사용 중지 훈련비 자부담 20% 부과 	・부정발급 : 처분일자로부터 90일 카드발급 제한 ・부정출결, 대리출석					
3회 이상	· 지원한도액에서 30만원 차감 · 60일간 계좌 사용 중지 · 훈련비 자부담 20% 부과	 · 지원한도액에서 100만원 차감 · 60일간 계좌 사용 중지 · 훈련비 자부담 20% 부과 	: 처분일자로부터 180일 카드사용 중지 ** 대리출결시 의뢰한 & 의뢰 받은 훈련생 동일 처분					
※ 근로자카드 발급 후 퇴사 시 유효기간 단축됨 (카드 발급시기에 따른 정확한 유효기간은 고용노동부 문의 바람)								

※위 유의사항에 따른 동의 체크

- 1. 훈련생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성실히 자신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훈련에 임하겠습니다.□
- 2. 근로자카드 및 사업주위탁 훈련생은 <u>지문인식기 및 카드인식기로 이루어지는 출석체크에 대한 안내를 기관으로부터</u> 정확하게 안내 받았으며, 반드시 기관에 등록한 훈련생 본인이 교육 받을 것을 약속합니다.□
- 3. 훈련생은 무단 강의장 이탈 및 외출, 출석부 조작, 대리 서명, 대리 출석, 타인 출결체크 등과 같은 훈련 부정 수급에 관한 행위 시, 카드 정지 및 모든 법적 불이익도 감수해야 합니다. □
- 4. 훈련생은 타인의 고용보험 납입 사실로 허위 교육을 받을 경우 명의를 빌려 준 사람과 명의를 도용한 사람 모두 고용노동 부에서 묻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며 훈련비 반환 조치 및 배액 징수, 훈련수강 제재 등과 같은 부당행위에 상응하는 어떠한 제재도 감수하겠습니다. □
- 5. 출석률 80%이상을 출석하고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. (표1 참고)
- 5-1.10일 이상이면서 40시간 이상 과정 수료 기준 확인 .□

(전체 출석일수의 80% 이상 출석 시 수료 / ex. 60H/20일 과정의 경우 16일 이상 출석 시 수료)

5-2.10일 미만 또는 40시간 미만 과정 수료 기준 확인 .□

(전체 훈련시간의 80% 이상 출석 시 수료 / ex. 36H/12일 과정의 경우 분단위로 차감되며 2,160분 중 1,728분 이상 출석 시 수료)

- 6. 근로자카드 미소지, 입·퇴실 출석 미체크 등의 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 🗀
- 7. 미수료 및 수강포기 등 중도탈락을 할 경우 <mark>미수료 및 수강포기 등 중도탈락에 따른 지원제한 기준(표2 참고)에 따라</mark> 처분이 내려지고 이후 훈련기관의 수강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□
- 8. 출석인정의 경우 출결시스템(근로자카드, 지문인식, QR코드), 강의장 내 출석(내부출결시스템) 그리고 수기출석부 세 가 지가 일치해야만 출석이 인정 가능합니다.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 □

◉ 훈련기관 유의사항

- 학원사정상 수강인원 미달, 강사 변경 시 폐강 및 연기처리 될 수 있습니다.
- 과정변경 및 취소 가능기간 : 3일 이상~10일 미만 (훈련시작일) / 10일 이상~30일 미만 (훈련시작일로부터 2일 이내)
- 개강 당일에 훈련기관에 고지하지 않고 미참여 시 자동으로 수강 취소됩니다.